

2020년 기업규제 개선 건의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요지

- 기업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는 공감.
- 그러나, 독립적인 감사인 지정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자율경쟁체제의 시장시스템과도 맞지 않다 사료되기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공개하고 기업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 그룹 안에서 지정 감사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요청.

□ 소관부처(규제기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1. 외부감사 대상회사

- 가. 주권상장법인
- 나. 상장예정법인
- 다.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자산 및 매출 500억이상)

2. 감사인 지정 제도

- 가. 주기적 지정: 기업이 자유선임 기간 6년후, 차기 3개년은 주기적 지정
- 나. 직권 지정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1개 사업연도)

□ 현황 및 문제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업은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기업>

1. 주권상장 법인
2. 상장예정법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
3.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소규모회사 제외	(소규모 회사:3가지 이상 해당)	
	① 자산 120억원 미만	① 자산 120억원 미만
	② 부채 70억원 미만	② 부채 70억원 미만
	③ 매출액 100억원 미만	③ 매출액 100억원 미만
	④ 종업원수 100명 미만	④ 종업원수 100명 미만
		⑤ 사원수 50명 미만

○ 외부감사제도의 분류

- “자유선임” 제도 : 기업이 자유롭게 선임하는 “자유선임” 제도
- “지정” 제도 :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

○ 감사인 지정 제도의 적용 기준

- 주기적 지정 : 기업이 자유선임 기간 6년후, 차기 3개년은 주기적 지정
- 직권 지정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 (1개 사업연도)

구 분	직권지정 사유
기존 지정사유	회사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감리결과 조치, 부채비율 과다(재무기준), 관리종목, 상장예정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요청, 횡령 배임 발생, 주채권은행 등의 지정요청, 감사 전 재무제표 등 외감법령을 위반한 경우
新 외감법 개정 추가	재무제표 대리작성·회계자문 요구, 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負의 영업 현금 흐름 또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투자주의 환기종목,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3년간 최대 주주(2회이상) 또는 대표이사(3회이상) 변경,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 위반

○ 감사인 지정 기준

-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별표에서 “회사”라 한다)는 다음 표에 따라 5개의 군(群)으로 구분한다.

구분	구분 기준
가군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나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다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4천억원 이상이고 1조원 미만인 경우
라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4천억원 미만인 경우
마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회계법인(이하 이 별표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표에 따라 5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회계법인이 속하는 군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법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직전 사업연도 감사업무 매출액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	직전 사업연도 감사대상 상장사 수	
가군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4개 총족
나군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30사 이상	4개 총족
다군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2명 이상	20억원 이상	10사 이상	4개 총족
라군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사 이상	3개 총족
마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 감사인 지정 방법

회사기준	가군	나군	다군	라군	마군
감사인 지정 가능 회계법인 기업군	가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다군, 라군	가군, 나군, 다군, 라군, 마군

※ 금융감독원은 상기 기준에 의거,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순서와,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 순으로 감사인 지정을 한다.

○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 받아야 하는 기업은 큰폭으로 증가함.

○ 금융감독원에서 기업과 회계법인을 1:1로 매칭하여, 의무적으로 해당 회계법인과 독점계약해야 하며, 이로 인해 외부감사 자유선택 임과 지정선택임은 감사비용이 큰 차이(약 2.5배_출처 : 조선일보 2019.06.19)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는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감사보수 증가율(2.53배)이 대기업(1.69배)보다 높게 나타나, 회계법인과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회계법인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짐.

○ 최근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대내외적 악재로 기업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으며, 채산성은 떨어지는 상황에 감사의 보수는 증가하고 있음.

2019년 상장사 자산 규모 별 감사 보수 증가 현황

자산규모	2조원 이상	1천억원~2조원	1천억원 미만
변화율	약 34% 상승	약 15% 상승	약 4.7% 상승

자료=금융위원회

(출처 : 조선비즈 2019.06.19)

○ 정부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교체시, 기존에 유연하게 허용됐던 부분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이미지에서 피해를 줄 수 있음.

□ 권의사항

○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공개하고, 기업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 그룹 안에서 지정 감사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을 아래(안)과 같이 권의함.

개 정 전	개 정 후
<p>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별표 4</p> <p>3. 회사의 감사인(회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p> <p>가.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의 표에 따른 회사 군별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p> <p>나.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p> <p>다. 회사 나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 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p> <p>라.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다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p> <p>마.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라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p> <p>바. 회사 마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마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p>	<p>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별표 4</p> <p>3. 회사의 감사인(회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p> <p>가.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의 표에 따른 회사 군별로 같은 군에 속한 감사인중 기업이 선택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한다.</p> <p>나.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한다.</p> <p>다. 회사 나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 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한다.</p> <p>라.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다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한다.</p> <p>마.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라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한다.</p> <p>바. 회사 마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마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한다.</p>

개인 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 **건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 **관련 법령** : 조특법 제104조 제33항

□ **개정안 주요 내용**

○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

- *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 (과세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 (과세방식)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현황 및 문제점**

- 불확실한 미실현 이득(배당)과세인 법인회사의 당기순이익금은 미래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 개인주주와 법인간의 재산 및 회계를 불가역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 체계에서 조특법 104조의33 신설규정은 이런 개념 취지와는 반대로 법인의 재산을 개인주주의 재산으로 임의·자의적 판단하고 있어 조세법 상호간의 상충되고 모순되는 논리임.

○ 80이상 지분소유한 1인 개인유사법인만 과세되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함.

□ **건의사항**

- 조특법 104조의33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간주 규정신설은 불확실한 미래의 미실현 이득에 대한 현재 시점의 무리한 과세이며, 유한 책임인 법인이 급변하는 경제환경하에서 손실, 투자 등에 대비하여 배당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억제하여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함.
- 1인 개인유사법인과 그 외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조세법 체계내에서도 법인세법과 신설규정은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며 비법리적인 규정으로 104조의 33 규정의 신설을 철회 폐지해 주길 의견 제출함.

정부 개정안	건의안
조특법 제104조33항	조특법 제104조33항 “ <u>철회 폐지</u>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 **건의처**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

(시행규칙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 ①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전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기준기간'이라고 한다)동안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

- 휴직 : 1개월 이상의 휴직

-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요건

: 총근무시간 20% 감소를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나, 총근무시간 (기존 근로시간) 산정시 상황 및 경우에 따라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연장 및 휴일)는 총근로시간에서 제외함.

□ **건의사항**

- 휴업수당 산정방식에 인정되지 않는 일시적, 불규칙적 시간을 포함하여 산정범위를 완화해 주기를 건의함.

주52시간 근로제 보안을 위한 법률 개정

□ **건의처**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들이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생산을 충분히 늘리고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식 이후 주52시간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특별연장근로 신청인가 : 올해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연장 근로 인가 사유 확대

□ **건의사항**

- 조기 경제회복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에서 **주52시간 근로제 보안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폭넓고 신속한 개정 건의함.**

『제조업 자체점검 및 개선활동 강화 방안 계획서』 작성제출 서류 간소화

□ **건의처** : 고용노동부 안전지청

□ **현황 및 문제점**

- 사고 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체 30~99명 사용업체” 를 대상으로 사업장 자체 점검 실시 및 개선 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안전지청에서 5월 31일까지 제출 요청함.(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1일까지 연장, 60여페이지 분량 개선계획서)
-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 감소, 휴업·휴직 등 **경영환경 악화** 및 영세기업 **전담인력 부족**으로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및 개선 계획서 제출에 있어 **경영 부담이 가중됨**.

□ **건의사항**

- **제출기한 재연장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해 주실 것을 건의함.

2021년 최저임금 동결

건의요지

-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 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에는 공감.
-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으로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존폐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021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

□ **소관부처(규제기관)** : 노동부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최저임금법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IMF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1%로 마이너스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국경 폐쇄와 강제 격리를 실시하면서 글로벌 수요와 공급망도 큰 타격을 받고 있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음.
-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은 두 달 연속 20%이상 급감했고, 내수 소비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최저 수준이며, 취업자 수 역시 외환위기 이후 21년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전개양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400 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한 '55' (기준:100)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동일한 수치임.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 등 고용축소로 대응할 것이라는 응답이 58.8%로 나타남.
- 이는 현장의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고, 당장의 임금 상승보다 고용유지를 더 시급하게 보고 있음을 나타내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보호 안전망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위기 이후에도 고용 시장 재진입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최저임금 협상에 있어 이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작용을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경제주체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으며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대의 당면 과제인 만큼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바랍.

□ 건의사항

-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였고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에서 고용의 충격이 가장 컸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가능성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의 악화를 넘어서 **회사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현상황을 심각히 인식하여 2021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주시기를 건의함.**

해외출장 복귀 근로자 격리 단축

건의요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 입국 제한 조치로 상품교역이 감소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는 등 경제활력 저하.
- 더욱이 해외 출장 복귀 기업인 및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심각한 업무 공백을 발생시켜 기업경영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PCR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는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격리를 면제하거나 단축해 줄 것을 건의.

□ 건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19 대책반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인해 글로벌 교역의 급감과 국제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단가 급락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 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경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 지난 4월, 한-중 사이에는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 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한중 기업인 입국 신속 통로를 운영함으로써 양국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기여하고 있음.
- 7월 독일, 영국 등 EU국가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 저위험 국가의 국민은 자가격리 면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기업인 및 근로자는 빠른 시일내에 복귀하여 정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바랍.

□ 건의사항

-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가피하게 해외출장은 강행해야 하나, 해외 출장 복귀 기업인 및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 2주는 업무에 심각한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외출장 기업인 및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 주기를 건의함.

『찾아가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환경컨설팅』 재개

□ **건의처**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 차원에서 『찾아가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환경컨설팅』 서비스가 잠정 중단됨.
- 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및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에 따라 전자문서 등을 통해 시행 중임(5월 18일부).
- 기존의 방문·대면 처리방식에 비해 문서접수 방식은 절차상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분초를 다투는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 기존의 방문·대면 처리방식에 비해 문서접수 방식은 절차상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분초를 다투는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방문·대면 서비스에서 문서접수 방식으로의 전환은 처리가 지연되고 현장에서 윈스톱으로 필요한 부분을 즉시 처리해 줌으로써 시간 절약 및 업무 효율성 증대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전자문서 등을 통한 행정 처리로 인해 기업이 불편을 겪는 등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시행하게 된 것에 공감하나,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반월·시화 산업단지 환경컨설팅』 서비스를 속히 재개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서 방문·대면 처리를 통해 기업의 애로·문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함.

【처리 결과】

건의처	경기도	담당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빠른 재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지원

□ **건의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산업 경력 퇴직 인력의 재취업을 돕고 채용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시행중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자동차 중소·중견기업 (전국 650명규모 선착순)
- **사업기간** : 2020. 3. 1. ~ 12. 31.
- **지원내용** : ‘20년도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자동차 중소·중견 기업에 1인당 최대 월 250만원 인건비 지원
- *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정년퇴직자, 기수혜자 제외)
- * 2020년 4월부터 지원 받을 경우 2,250만원 지원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및 고속런 퇴직 인력 채용기업에 보조금 지원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을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으로 연결하여 재취업 유도
 - 양질의 고용 창출을 통한 자동차부품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용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제출서류(1단계)** : 신청서(붙임양식),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주관 및 문의처** : 한국자동차연구원 041-559-3197, 9196

□ **건의사항**

○ 국비 90%, 지방비 10%를 포함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비 매칭이 없을 경우 국비 지원 불가 사업으로 자동차산업의 불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동차 업계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 사업 참여를 건의함.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담당과	일자리정책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21년도 사업지속 운영시, 지방비 지원으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고려 할 예정임.			

화관법 『고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완화

건의요지

- 화평법에 의거하여 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로 지정되어 유해화학물질로서 화관법에 의해 관리.
- 그러나, 이는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특성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취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렵게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기업 경영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바 이에 대한 개정을 요청.

□ 소관부처(규제기관) : 환경부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3,000킬로그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6조(운반차량) 1-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및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현황 및 문제점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의 법률(이하 화평법)에 의거하여 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로 지정되어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납 화합물의 화평법상의 평가

가. CAS No. : 7439-92-1

나.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 제한물질(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추가 안내사항: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라. (다)항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임

- ※ 유럽에서는 REACH에서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로 규정되어 있고 UN과 미국에서는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solid, n.o.s에 해당하는 Class 9으로 구분하여 운송 등에 필요한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는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특성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취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고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출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액체상태의 물질과 같은 기준으로 일률적 적용은 불합리함.
- 고체상 물질(납)은 액체상태의 물질과 달리 취급상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수(水)용해도가 높은 물질과 같은 취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제도임.
- 특히, 고체상 물질의 운반의 경우 액체상 물질의 운반에 비해 물질의 특성 중에서도 수(水)용해도 등을 검토하여 운반시의 의무사항 간소화가 절실히 요청됨.

- 또한,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득한 사업자에 의뢰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액체상 물질이 아닌 고체상 물질의 경우 영업허가를 득한 사업자와 유해화학물질 운반자(8시간/2년) 교육을 득한 운전자의 수가 적어 상대적 운임이 과하게 책정되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높은 실정이며 교육 수수료 운전자 및 규정에 만족하는 차량의 수가 적어 사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됨.

	미국	한국
규정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Act (HMTA)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화학물질관리법
운송계획서 대상물질	Class A와 Class B 폭발성 물질만 제출 (Class 9 인 Lead Ingot은 제출 대상 아님)	유해화학물질: 5톤이상 제한물질: 3톤이상
제출처	The Bureau of Motor carrier Safety	유역환경청
운전자 교육	3년마다 사업장 자체 교육	2년 8시간 화학물질안전원 지정 교육기관

※ 미국과 한국의 화관법 내용 요약

□ 건의사항

-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해 화학물의 유해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화평·화관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고체상 물질의 운반과정에 있어 전혀 유해하지 않음에도 관리기준이 과도하여 비용 및 행정 처리에 있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바 수(水)용해도가 없고 누출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운반 등의 취급에 대한 화관법상의 의무 간소화 개정을 붙임(안)과 같이 건의함.

붙임: <고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간소화>와 관련 건의(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현 행	건의(안)
제11조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3,000킬로그램	제11조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2. 제한물질 : 25,000킬로그램

☞ 납의 경우 비중이 11.34로 비중이 1인 경우에 11배 이상 중량차이 발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현 행	건의(안)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3년 또는 매 5년마다 8시간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현 행	건의(안)
제6조(운반차량) 1-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및 밀폐 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벤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제6조(운반차량) 1-가.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 (검사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화물차량

【처리 결과】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과	화학안전과
건의 내용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해화학물질(제한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금지되고,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금지 * 상기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면제 대상 ○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특성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 ○ 고체상 물질(납)은 액체상태의 물질과 달리 취급상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수(水)용해도가 높은 물질과 같은 취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체상 물질의 운반 및 취급의 경우 액체상 물질과 달리하여 의무사항 기준 완화 필요 * 운반과정에 있어 전혀 유해하지 않음에도 관리기준이 과도하여 비용 및 행정처리에 있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발생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水)용해도 및 누출사고의 위험성이 낮은 고체(납) 유해화학물질 운반 등의 취급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상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반계획서 제출 기준 완화 : 3톤 이상 → 25톤 이상 - 운전자 법정 의무교육 완화 : 8시간/2년 → 8시간/3년(또는 5년) - 고체 상태의 납은 일반 화물차량 운송이 가능하도록 허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부처 의견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에 녹지 않는 고체상 유해화학물질이더라도 사고시 화재 등으로 인한 증기 유출 등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운반계획서 제출 및 운반자 안전교육은 필요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사고 예방·신속대응을 위해서는 납 등 고체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운반계획서 및 안전교육 기준을 별도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곤란 -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 시설기준을 갖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이송 필요 		

폐기물 처리상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완화

건의요지

-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며, 계량값 등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와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과정의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
-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확대에서 정한 대상에 폐기물 관련업의 업종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폐기물 처리업을 포함하고 있고, 더욱이 프로그램 입력이 어려운 영세 배출자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은 위법행위를 초래하여 개정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바 재검토 요청.

소관부처(규제기관) : 환경부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제58조 등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없는 재활용이 가능한 유가성 폐기물과 소량폐기물 까지 기준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폐기물 관련업의 업종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일률적 적용은 불합리함.
-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사항 중, 폐기물을 인수·운반할 때마다 폐기물 계량시설 및 보관 장소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업장에 전담자가 없거나 1인이 수행하기에 과도한 행정업무로 부담을 가중시킴.

예) 폐기물 인수·운반을 20~30대 하는 경우

- 계량시설 보관시설 총 40~60개 영상정보를 수집 작성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원은 1명으로 다른 환경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업무 과중

○ 개인이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 규모의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영세 배출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확대실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클 것으로 우려됨.

○ 영세 규모의 경우, 급여 등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과도한 행정관리 업무와 처벌 위험부담 등으로 취업기피 및 잦은 이직 발생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구인난에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수급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건의사항**

○ 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가로 사들인 폐기물의 경우 불법처리의 우려가 없고 영세 규모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은 위법행위를 초래하여 개정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래(안)과 같이 개정 등 재검토 요청.**

<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안)** >

① 제1안 : **재활용이 가능한 유가성 폐기물과 소량폐기물은 입력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 추가**

「폐기물관리법」 현행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안)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 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 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폐기물 부정적 처리가 없는 재활용이 가능한 유가성 폐기물과 소량폐기물은 제외) .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2안 : 일부 수정

「폐기물관리법」 현행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안)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 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 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폐기물의 운반과 관련한 사진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계량값을 말한다.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폐기물 부정적 처리가 없는 재활용이 가능한 유가성 폐기물과 소량폐기물은 제외한다.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폐기물 계량시설 및 보관장소의 영상정보 4. 폐기물의 운반과 관련한 사진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처리 결과】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과	폐자원관리과		
부처의견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곤란	
	<p>○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의무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19.2.21.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18.11.29.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p> <p>■ 폐기물 처리 전과정 관리(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 구축 및 현장정보 감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인허가 정보, 현장 영상정보, 계량정보 수집전송 시스템 구축 등 감시기능 강화 - 수집·운반·처리 등 현장정보 전송 대상 업체 확대, 운반 차량 GPS 부착 등 <p>○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었고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환경부령에 위임되었음</p> <p>○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20.5.27.시행)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는 이미 폐기물의 계량값만을 의미하고 영상정보, 사진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폐기물 배출·처리자들의 추가 부담은 없는 상태임</p> <p>※ 계량값은 기존에도 폐기물 배출·처리자들이 전자정보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입력하면서 기본적으로 입력하던 항목임</p> <p>○ 또한 향후 관련 시스템 구축 시 현장정보를 현재처럼 '수기입력' 방식이 아닌 '자동전송'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p>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곤란
	【심의개요】	<p>○ 일시/장소 : 2020.7.8.(수), 삼경교육센터(서울)</p> <p>○ 참석자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자원순환분과 위원</p> <p>○ 심의대상 :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및 중장기검토 과제</p>			
	【심의내용】	<p>폐기물 적법처리를 위한 제도이므로 전자정보처리 입력 완화는 곤란하며, 현행 시행규칙에는 계량값이외 다른 정보는 추가되어 있지 않음</p>			
	【추가검토】	-			

부처의견 (최종)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p>법률 개정 ()</p> <p>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p> <p>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p> <p>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p> <p>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p>		
		○ 부처 1차의견과 동일		
		○ 해당없음		
		추진 일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과징금

건의요지

-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취지에 공감.
-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중 안 제11조(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계산 방법)에서 정한 과징금의 기준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렵게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바, 과징금의 계산방법 적용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

□ 소관부처(규제기관) : 환경부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 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④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대상인 폐기물처리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폐기물 관련업의 업종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폐기물처리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예) 폐기물처리 업체별 매출액 산정 기준 비교

1. 폐기물 처분업체(소각/매립 등)
 - 배출업체에서 받은 처리비용이 매출액으로 산정
 2. 폐기물 재활용업체(배출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받음)
 - 배출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원재료로 재활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비용이 매출액으로 산정
 - 배출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받으므로 제품 제조단가가 낮아 매출액이 다른 재활용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3. 폐기물 재활용업체(배출업체에 폐기물 구입비용 지불)
 - 배출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원재료로 재활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비용이 매출액으로 산정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비용 지불하여 구입하고, 구입한 폐기물은 원재료로 재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폐기물 구입 비용이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매출액 다른 폐기물업체에 비해 높다.
- ※ 폐기물 구입비용이 매출액대비 50~60%를 차지하고 제조원가에는 80% 정도 차지한다.

□ 건의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배출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받은 업체와 배출업체에 폐기물 구매비용을 지불하는 업체를 구분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함.

【처리 결과】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과	자원순환정책과	
부처 의견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곤란
	<p>○ 기존 제도 유지 필요</p> <p>-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매출액이 큰 업체의 경우 그에 비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p> <p>- 또한, 매출액 산정 시 원료(예 : 재활용품)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업체간 차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타법*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p> <p>*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유사법 :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사업법, 공정거래법 등</p>				
위원회 심의 (입증책임)	【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곤란
	【심의개요】	<p>○ 일시/장소 : 2020.7.8.(수), 삼경교육센터(서울)</p> <p>○ 참석자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자원순환분과 위원</p> <p>○ 심의대상 :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및 중장기검토 과제</p>			
	【심의내용】	단계별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경 근거도 있으므로 원안 유지 필요			
	【추가검토】	-			
부처 의견 (최종)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곤란
	수용(일부수용) 시 개선형식	법률 개정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개정 ()			
		지자체 규정(조례, 규칙 등) 개정 ()			
		기타 제도(내부규정, 계획, 해석 등) 개선 ()			
○ 부처 1차의견과 동일					
추진 일정	○ 해당없음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 및 정보제공』

건의요지

-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
- 그러나, 화학물질 등록 등 신청 시 제출자료 및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자료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관리가 어려워 기업 경영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바 이에 대한 자료를 온라인상에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건의.

소관부처(규제기관) : 환경부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유해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에 따른 관리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동시에 타사에서 구매까지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 동일 물질에 대해 상위 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다수의 대리점을 통해 구매 시에는 자료의 중복 제공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업무가 발생됨.
- 또한, 하위 사용자에게 모든 물질에 대한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 판매량, 안전사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보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관리가 어려워 기업 경영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있음.

□ 건의사항

- 화평법 제14조, 제30조와 관련하여 반복적인 행정처리 및 관리업무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기업 경영의 지속성 저해 및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자료를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련 내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건의함.
※ EX) 배출량조사시스템

【처리 결과】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과	화학물질정책과
건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현 황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동시에 타사에서 구매를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 동일 물질에 대해 상위 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 다수의 대리점을 통한 구매 시에는 자료의 중복 제공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업무 발생 <input type="checkbox"/> 문제점 ○ 하위 사용자에게 모든 물질에 대한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 판매량, 안전사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보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부처 의견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 온라인상 하위사용자 정보를 제조·수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및 등록정보 시스템 구축 필요 -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검토 하겠음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제도』

□ **건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경기도

□ **현황 및 문제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 중 유독물질, 발암성물질 등 고독성물질 위주로 510종을 지정·고시함.('15.7.1)
- 지정·고시된 물질(510종)은 ' 18.6월까지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제조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제조 수입 전에 유예기간 없이 등록해야 함.
- 화학물질 등록은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등록비용을 공동분담함.
- 후발주자로 기존 협의체에 등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과도하며, 비용정보에 대해서도 불투명함.
- 등록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화학물질 등록비용은 낮아져야 하는 구조가 당연하나 오히려 비용을 올려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등록비용은 원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경영 유지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화평법, 화관법에 해당하는 미국 TSCA(Toxic Substance Control Act) 목록에는 약 8만여종의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있어 신규 화학물질이 아니면 제조·수입하려는 물질이 TSCA 목록에 있고 중요 신규 용도가 없다면 제출서류가 없음.

□ **건의사항**

- 미국의 경우처럼 정부가 운영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렵다면, 기존 협의체가 후발주자에게 불투명한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협의체를 정부에서 운영하여 후발주자나 중소기업에도 공평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함.

【처리 결과】

건의처	대한상공회의소, 경기도	담당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경기도 요청으로 대한상의에서 도내 기업으로 및 건의사항 취합하여 도에 전달, 회신은 아직 없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 **건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경기도

□ **현황 및 문제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19. 3. 28 시행)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시 해당항목이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이면 정해진 기한 2개월 내 보완해야 하며, 부적합사항에 대해 보완기간 내 보완조치 및 확인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승강기 운행이 불가함.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장에서 소형화물용으로 저층건물(1층→2층)에 설치하여 운행하는 승강기에도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 아닌 이중 안전장치를 보강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된 개정사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건의사항**

- 부적합사항에 대해 보완기간을 2개월내로 정하고 있으나 안전부품 구입시기 등을 고려하면 보완하기에 무리한 일정으로 **보완기간을 6개월 이내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공장에서 소형화물용으로 저층건물(1층→2층)에 설치하여 운행하는 승강기는 기존 안전장치로도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일률적 적용을 제고해 주시기를 건의함.

【처리 결과】

건의처	대한상공회의소, 경기도	담당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경기도 요청으로 대한상의에서 도내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취합하여 도에 전달, 회신은 아직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및 지정수량 기준』

건의요지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
- 그러나, 이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세부적 기준 적용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에 적정 아이템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위험물 보관시설 허가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 및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개정을 요청.

□ 소관부처(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제4류 인화성 액체 3. 알코올류 400리터

□ 현황 및 문제점

- 에탄올 70% 이상 함유된 손소독제는 주원료 에탄올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제4류 인화성 액체인 알코올류로 구분되어 지정수량 400리터 이상일 경우 위험물 보관시설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에탄올 70% 이상 함유된 손소독제의 경우 비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젤타입으로 에탄올 60% 수용액보다 인화점(인화점 30℃, 연소점 33℃)이 높아 인화성 물질로 볼 수 없음에도 인

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리적 특성에 관계없이 에탄올 함량에 따른 기준으로 알코올류로 분류되어 지정수량 적용을 받고 있어 그 기준이 불합리함.

※ 주원료인 에탄올 60% 미만 수용액에 대해서는 제외조항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손소독제 수요에 대한 공급을 맞추기 위해 많은 중소기업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손소독제에 대한 기준의 재검토는 절실히 요구됨.

□ 건의사항

-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에탄올 70% 이상 함유된 손소독제는 비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화점이 에탄올 60% 수용액보다 높아 인화성 물질로 볼 수 없음에도 에탄올의 함량에 따른 기준으로 알코올류로 분류되어 지정수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에 그 기준이 불합리하여 물질의 인화점에 대한 기준으로 위험물 유무를 판단해 주기를 건의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건의요지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
-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정한 보유공지의 기준은 관련법 개정 이전에 적합하게 설치한 기업에도 소급적용 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렵게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이중고를 발생시켜 기업 경영의 계속성을 저해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

□ 소관부처(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 관련)

Ⅱ. 보유공지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 현황 및 문제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_ Ⅱ. 보유공지에 따르면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려면 공지의 너비를 5m 이상 확보해야 함.

- 그러나, 관련법 개정 이전에 제조소를 설치한 기업은 당시 관련법의 적법한 절차 및 기준에 의해 지어졌음에도 관련법의 소급 적용으로 5m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을 염두에 두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음.
- 5m 부지 확보를 위해 타회사의 부지를 사들이거나, 스토리지 탱크를 이전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 발생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포함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영 손실 초래로 존폐를 위협하는 만큼 방화상 유효한 격벽 설치를 적용하는 등 유연한 대응책 및 구제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 건의사항

- 화재가 발생된 경우에 상호간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여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련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개정 이전에 적합하게 설치된 기업에도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깨고 관련법의 소급 적용으로 기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련법 소급 적용 철회는 불가능하더라도 유연한 대응책 및 다른 구제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함.

『제어 풍속 선정 기준』 상충 관련법 통일

건의요지

- 동일 장비의 제어 풍속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안전 부문 및 환경 부문의 상이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관리가 어려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두 부처간 상충되는 관련법을 통일해 주기를 건의.

□ 소관부처(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환경부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구 분		산정 기준	제어풍속 (m/sec)	비 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물질의 상태	가스 상태	1.0	현장 실측
	후드 형식	외부식 상방흡인형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실무 편람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지침서 19p)	유해물질 발생 상태	움직이지 않는 공기 중에서 실제 속도가 없는 상태	0.25~0.5	현장 실측(X) (설비 사양으로 기준 산정)
	공정 형식	용기의 액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 증기, 흙, 등		

□ 현황 및 문제점

※ 사례 : 프레스 기계 도입에 따른 중앙부처별 법령 차이

사 진	내 용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
	<p>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실무 편람</p> <p>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환경산업 환기기술 등의 실무편람을 활용, 설비 사양을 통한 제어풍속 산정 *지침서 19페이지 <표1-1 참조></p>

□ 건의사항

- 동일 설비임에도 중앙부처별 관련법의 제어풍속 선정 기준이 상이하여 설비 도입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노동부)와 대기오염방지시설 변경신고(환경부)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바 상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통일해 주기를 건의함.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 창고 설치

□ **건의처** : 안산시 도시계획과, 상록구 민원봉사과 지적팀

□ **현황 및 문제점**

- 태광프랜트(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공장으로 사용되어 온 공장부지에서 플랜트 설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며 수출 증대를 통해 국익에 일조해 오고 있음.
- 그러나, 동사업장(부곡동 84-5, 87-14, 87-21)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등재되어 있어 공장 증축이 불가함.
- 생산품 특성상, 일정기관 보관이 필요하여 물류 창고 설치가 요구되나, 상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출하시까지 생산품을 노상에 적치·보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제품의 부식 현상으로 매년 쇼트 블라스트 비용이 연 8,000만원 상당 발생되고 있음.
- 상기 지번은 지목상 전이나 공장등록증에는 공장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바, 기업 활동을 원활히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애로 해결을 요청함.

□ **건의사항**

- 기업경영 관리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원활한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내(부곡동 84-5, 87-14, 87-21) 물류 창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 허가해 줄 것을 건의함.**

【지목변경 사진】



【생산품 노상 보관 사진】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도시계획과		
	담당과		상록구 민원봉사과 지점팀		
의견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조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곤란
	○ 그린벨트 내 물류창고 설치 허용 불가함.				

공단 내 국유지 매입 신청

□ 건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 현황 및 문제점

- (주)티엘비(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3번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반월공단의 대표적인 글로벌리더 기업으로 국익에 일조해 오고 있음.
- 동사업장과 서로 맞닿은 국유지는 주변 근로자들의 쓰레기 투기로 인해 악취 및 해충이 발생되고 있어 동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경으로 조성된 토지는 집중 호우시 토사 유출 등에 노출되고 있음.
- 동사업장과 서로 맞닿은 국유지는 주변 근로자들의 쓰레기 투기로 인해 악취 및 해충이 발생되고 있어 동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경으로 조성된 토지는 집중 호우시 토사 유출 등에 노출되고 있음.

※ 매입 신청 국유지 토지 현황

-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일반 453-2
- 지 목 : 도로
- 면 적 : 284.3㎡

□ 건의사항

- 기업경영 관리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원활한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건의함.

【(주)티엘비 소재지 일대】



【매입 신청 국유지】



매입
신청
국유지

【처리 결과】

건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담당과			
의견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정책에 따라 매년 계획한 연간 매각 수입 한도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이미 한도가 소진되어 더 이상의 매각은 곤란함. 단, 처분 방법 외에 대부 등을 통해 동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검토 할 수 있으며 내년도 연초 신청할 것을 요청함.				

공단 내 사유지 매입 신청

□ 건의처 : 안산시 회계과

□ 현황 및 문제점

○ (주)티엘비(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3번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반월공단의 대표적인 글로벌리더 기업으로 국익에 일조해 오고 있음.

○ 동사업장과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사업장 부지에 비해 높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산사태 등에 노출되고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여 축대 설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공간 확보를 통해 물류 창고 또는 주차장 등의 활용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매입 신청 사유지 토지 현황

-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일반 451
- 지 목 : 체육용지
- 면 적 : 24,593.4㎡의 일부

□ 건의사항

○ 기업경영 관리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원활한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건의함.

【(주)티엘비 소재지 일대】



【매입 신청 사유지】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담당과	회계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증장기검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근란
의견	○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 불가능함.		

범지기로 74 일대 반사경 설치

□ 건의처 : 안산시 단원구 경제교통과

□ 현황 및 문제점

- 대원산업(주)(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74 / 원시동) 소재지인 범지기로 일대에는 다수의 업체가 입주하여 많은 화물차 및 방문차량 등이 통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장 방문차량은 사업장에서 범지기로 진출시 주변 차량 주차 등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이는 범지기로 일대를 이용하는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됨.

□ 건의사항

- 범지기로 일대 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지속하고 통행하는 차량 및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동 사업장 출입로에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며, 설치 비용상의 문제가 있을 시 당사에서 자사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건의함.

【범지기로 74 일대】



【현장 사진】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단원구	담당과	경제교통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증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반사경 설치함.			

만해로 151 일대 반사경 설치

□ **건의처** : 안산시 단원구 경제교통과

□ **현황 및 문제점**

- 만해로 151 일대에는 다수의 업체가 입주하여 많은 화물차 및 방문차량 등이 통행하고 있음.
- 특히, (주)영재철강은 생산 제품 상차를 위해 매일 수십대의 화물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으나, 출하장의 진출입로가 곡선 구간으로 위치하고 있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이는 만해로 151 일대를 이용하는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됨.

□ **건의사항**

- 만해로 151 일대 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지속하고 통행하는 차량 및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동 사업장 출하장 출입로에 반사경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함.



【현장 사진】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단원구	담당과	경제교통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증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반사경 설치함.			
				

신원로 91번길 67 일대 반사경 설치

건의처 : 안산시 단원구 경제교통과

현황 및 문제점

- 제이에스파워텍(주) 소재지인 신원로 91번길 일대에는 다수의 업체가 입주하여 많은 화물차 및 방문차량 등이 통행하고 있음.
- 특히, 동 사업장은 생산 제품 출하를 위해 매주 수십대의 화물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에서 신원로 91번길 진출시 주변 주차 차량 등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이는 신원로 91번길 일대를 이용하는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됨.

건의사항

- 신원로 91번길 일대 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지속하고 통행하는 차량 및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동 사업장 진출로에 반사경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함.

【신원로 91번길 일대】



【현장 사진】

진출로



반사경 설치 요청 지점

반사경 설치 필요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단원구	담당과	경제교통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신원로 91번길 67 일대 진출로 주차선 삭선 병행 건의 → 주차선 삭선 확정에 따라 반사경 설치 불필요하게 됨.			

산단로 248 일대 반사경 설치

□ **건의처** : 안산시 단원구 경제교통과

□ **현황 및 문제점**

- 우진공업(주) 소재지인 산단로 248 일대에는 다수의 업체가 입주하여 많은 화물차 및 방문차량 등이 통행하고 있음.
- 동 사업장 방문차량은 사업장에서 산단로 진출시 주변 주차 차량 등으로 3차선 통행 차량의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 이는 산단로 248 일대를 이용하는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며, 동 사업장에서는 진출구 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주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해 두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잦은 민원 발생으로 기업 경영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 **건의사항**

- 산단로 248 일대 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지속하고 통행하는 차량 및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동 사업장 진출로에 반사경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함.

【산단로 248 일대】



【현장 사진】

진출로



반사경 설치 요청 지점

반사경 설치 필요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단원구		담당과		경제교통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도로 곡선구간 등 구조적으로 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구간 등 불가피한 경우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구간에 설치가 어렵다고 함.				

첨단로 303 일대 도로 중앙선 절선

□ 건의처 :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 현황 및 문제점

- 신세라믹(주)은 1993년 반월공단으로 신축 이전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소량 다품종의 세라믹 소재들을 상용화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수출을 통해 국익에 일조해 오고 있음.
- 동 사업장은 생산 제품 상차를 위해 화물차 등 방문 차량이 수시로 진출입하고 있으나 2016년 말 도로공사 전까지 없었던 중앙선이 이후 생기면서 업무로 인한 방문 차량의 불편이 지속 발생되고 있음.
- 황색 실선 중앙선으로 인해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U턴도 여의치 않아 원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이로 인해 방문 차량의 물류비 증대 및 대기 오염도 증가시키고 있음.

□ 건의사항

- 동 사업장 방문 차량의 업무 편의 도모 및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동 사업장 앞 도로 중앙선을 절선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불가능할 경우 근거리에서(엠티브이 6로) 유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

【첨단로 303 일대】



【현장 사진】

2016년 말 공사 전후



절선 또는 점선 변경 요청 지점



U턴 설치 지점 (엠티브이 6로)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단원경찰서		담당과	경비교통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증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p>○ 2020년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 안건 제출에 대한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교통량의 변화가 없을 시 재상정이 어려운 점에 대해 참고할 것을 회신 받음.</p> <p>○ 단, 엠티브이6로 U턴 설치 필요성에 대해 수용하였으며, 안산시 해당과로 이첩하여 설치하도록 함.</p>				

신원로 73 일대 도로 중앙선 절선

건의처 :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현황 및 문제점

- (주)중일은 1976년 창사 이래 납 제련 산업의 한 길로 매진해 온 회사로서 현재 비철금속 업계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으며, 반월공단 내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일조해 오고 있음.
- 동 사업장은 생산 제품 상차를 위해 대형 물류 운반 차량을 포함하여 월평균 3,500여대(화물컨테이너 1,500여대, 임직원 차량 2,000여대)의 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으나, 황색 실선 중앙선으로 인해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U턴도 여의치 않아 원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 이로 인해 방문 차량의 물류비 증가 및 대기오염 발생뿐 아니라 부득이방문 차량의 법규위반 사례가 일어남으로써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이는 신원로 73 일대를 이용하는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됨.
- 더욱이 동 사업장 옆에 소재한 안산도금단지는 진출입 차량이 동 사업장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중앙선이 절선되어 있는 바, 중앙선 절선을 연장함으로써 방문 차량의 접근성·편리성 및 교통 안전성을 높여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 건의사항

- 동 사업장 방문 차량의 업무 편의 도모 및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신원로 79(안산도금단지) 일대 중앙선 절선을 연장하여 동 사업장 앞 도로 중앙선을 절선해 줄 것을 건의함.

【신원로 73 일대】



【현장 사진】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단원경찰서	담당과	경비교통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2020년 12월 건의함.			

산성로 21 일대 도로 중앙선 절선

□ **건의처** :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 **현황 및 문제점**

- 일정실업(주)은 1987년 산업용 섬유제품인 자동차 시트용 원단 전문 염색가공 공장을 설립한 이래, 우수한 품질과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한국의 산업용 섬유산업계를 선도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반월공단 내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해 오고 있음.
- 동 사업장은 생산 제품 상차를 위해 화물차 등 방문 차량이 수시로 진출입하고 있으나, 황색 실선 중앙선으로 인해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U턴도 여의치 않아 원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 이로 인해 방문차량의 물류비 증가 및 대기오염 발생뿐 아니라 부득이 방문차량의 법규위반 사례가 일어남으로써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이는 산성로 21 일대를 이용하는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됨.
- 더욱이 동 사업장과 약 100m 떨어진 (주)신명이앤지(산성로 9)는 매출액 및 방문차량이 동 사업장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선 절선이 허용되어, 방문차량의 안전성·접근성·효율성을 높여 기업애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바 동 사업장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함.

□ **건의사항**

- 동 사업장 방문 차량의 업무 편의 도모 및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동 사업장 앞 도로 중앙선을 절선해 줄 것을 건의함.

【산성로 21 일대】



【현장 사진】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단원경찰서	담당과	경비교통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근란
의견	○ 2020년 12월 건의함.		

만해로 151 일대 출하장 진출입로 회전구간 공간 확보

□ 건의처 : 안산시 단원구 경제교통과

□ 현황 및 문제점

- 만해로 151 일대에는 다수의 업체가 입주하여 많은 화물차 및 방문차량 등이 통행하고 있음.
- 특히, (주)영재철강은 생산 제품 상차를 위해 매일 수십 대의 화물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으나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 좌회전 통행 시 주변 주차차량으로 인해 회전 공간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이는 만해로 151 일대를 이용하는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됨.

□ 건의사항

- 만해로 151 일대 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지속하고 통행하는 차량 및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동 사업장 출하장 진출입로 회전구간의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함.

【만해로 151 일대】



【현장 사진】

출하장 출입로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단원구	담당과	경제교통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2020년 12월 출하장 진출입로 주차선 삭선에 따른 회전구간 공간 확보 함.			

신원로 91번길 67 일대 진출로 주차선 삭선 요청

□ **건의처** : 안산시 단원구 경제교통과

□ **현황 및 문제점**

- 제이에스파워텍(주)은 생산 제품 출하를 위해 매주 수십 대의 화물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에서 신원로 91번길 진출 시 주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형 화물차량 진출 시, 주변 주정차 차량 이동이 필수이나 주정차 차량 주인과의 연결 불가로 지체에 따른 운임 추가 비용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며, 중형 화물차량의 경우에도 공간 확보가 어려워 여러 번의 차량 회전을 통해서만 진출이 가능함.
- 특히, 동 사업장 소재지인 신원로 91번길 일대에는 다수의 업체가 입주하여 많은 화물차 및 방문차량 등이 통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이는 신원로 91번길 일대를 이용하는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됨.

□ **건의사항**

- 제이에스파워텍(주)의 생산 제품을 출하함에 있어 화물 차량의 원활한 진출로 기업경영 관리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신원로 91번길 일대를 통행하는 차량 및 근로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동 사업장 화물차량 진출 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정선 삭선을 건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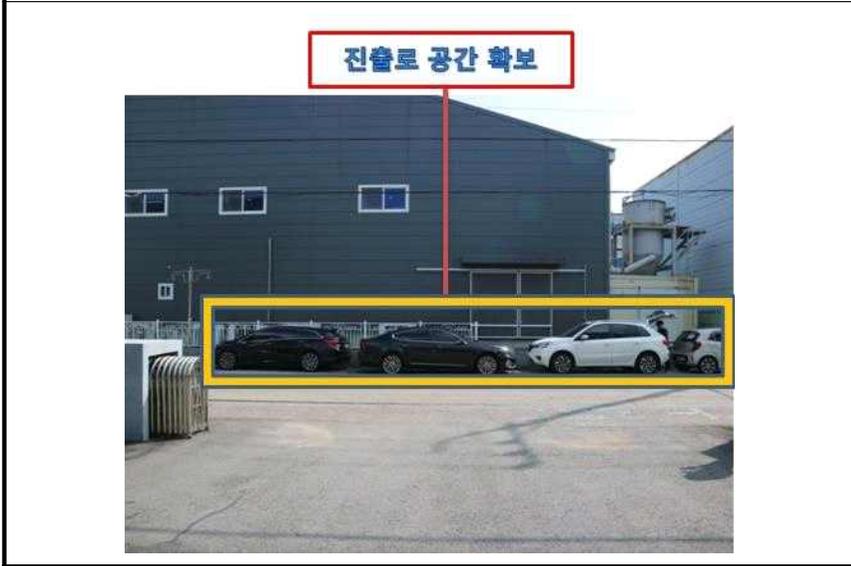
【신원로 91번길 일대】



【현장 사진】



진출로 공간 확보 요청 지점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단원구		담당과		경제교통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2020년 12월 당사 진출입로 주차선 삭선에 따른 회전구간 공간 확보함.					

강촌로 139번길 9 일대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건의처 : 안산시 교통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주)코리아써킷 소재지인 강촌로 139번길 9 일대에는 주야 일평균 1,500~2,000명의 당사 및 외주업체 임직원이 해당 도로를 차량·도보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변 방문 차량이 수시로 해당 도로 구간으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 삼화왕관 대로변 버스 정차 후 당사까지 들어오는 강촌로 139번길 9 도로에 보행도로(보호웬스)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년 3~4회 인사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 또한, 주변 일대 주차로 인해 대형차량 이동시 차량 정체가 극심하고, 긴급사항 발생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상기와 같은 경우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수시로 노출되고 있어 이는 강촌로 139번길 9 일대를 이용하는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됨.

□ 건의사항

- 강촌로 139번길 9 일대 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지속하고 차량 및 근로자가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예산 확보를 통해 보행자 전용 도로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함.**

【강촌로 139번길 9 일대】

요청사항
<p>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하기와 같이 휠스포함 전용도로 신설)</p> <p>1번 구간) 약 78.2M 2번 구간) 약 233M 3번 구간) 약 174M</p>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담당과	교통정책과	
의견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 예산 미확보로 당장 수용 곤란하나, 향후 사업예산 남을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함.			

【현장 사진】



공단 내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계도 조치

□ **건의처** : 안산시 단원구 경제교통과

□ **현황 및 문제점**

- 반월·시화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갖고서도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하여 근로자들이 출퇴근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대다수 근로자가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협소한 사업장 공간은 대부분 자재 보관 및 화물 차량의 이동·적재공간으로 활용되어 근로자의 출퇴근용 자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기가 힘들며, 이러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의 공간에 주정차시키고 있음.
- 더욱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보도정비 공사』로 인해 주차 공간 감소 구간이 발생되어 부득이 불법주차 및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나, 주·정차 단속시 과태료로 인해 해당 구역 근로자 및 기업의 애로는 가중되고 있음.

□ **건의사항**

- 공단내 교통 여건 및 주정차 공간을 고려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코로나19 사태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여건 및 공단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원접수에 의한 단속시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중심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함.**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단원구	담당과	경제교통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증장기검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공단 특성을 감안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고 있으나, 민원접수에 의한 단속은 진행할 수 밖에 없음. 더욱이 개별적으로 사진촬영을 통한 개별 온라인 접수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불가피함.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보도정비 공사』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 **건의처** : 안산시 단원구 경제교통과

□ **현황 및 문제점**

- 반월·시화공단은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대다수 근로자가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협소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출퇴근용 자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이러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의 공간에 주정차시키고 있으며, 인도 위 주정차도 가능하여 일부분 주차문제에 도움이 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보도정비 공사』로 인해 주차 공간 감소 구간이 발생되어 부득이 불법주차 및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해당 구역 근로자 및 기업의 애로는 가중되고 있음.

□ **건의사항**

- 공단내 교통 여건 및 주정차 공간을 고려하여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보도정비 공사』 후에도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건의하며 공사 기간 중 주차공간을 많이 할애하는 구간은 휴일에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요청함.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단원구		담당과	경제교통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증장기검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반월산업 보도블럭 재생사업』은 국토부 예산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생사업 심의 시 인도에는 일체의 차량이 주정차 불가능하도록 의결됨.				
	○ 『반월산업 보도블럭 재생사업』은 평일 근로자의 주차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는 구간은 휴일에 공사 진행토록 하겠다고 함.				

재건축 착공에 따른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 **건의처** : 안산시 건축디자인팀

□ **현황 및 문제점**

- 반월공단 내 성곡동 594-5번지 일대 물류창고 공사에 의해 주차 불가능·공사에 의한 대기먼지 발생 등 인근 기업체 및 근로자의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으나, 공사기간 및 관련 시공자의 연락처 등 일체의 안내 및 고지가 없어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음.

□ **건의사항**

- 공사 주변 기업 및 근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감안 하여 **빠른 시일내 건축허가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함.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담당과	건축디자인팀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증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완료함				
					

공단 내 가로등 파손 보완

□ **건의처** : 안산시 기업지원과 기반시설팀

□ **현황 및 문제점**

- 반월공단 내 원시로 179일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건의사항**

- 원시로 179 일대 기업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가로등 파손에 따른 보완을 해 줄 것을 건의함.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담당과	기업지원과 기반시설팀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증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2020년 12월 건의하여 수용 처리중임.				

신길천 일대 제초작업 및 방역소독

건의처 : 안산시 건설도로과, 안산시 단원보건소

현황 및 건의사항

- 반월공단내 신길천 일대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으로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쾌적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풀을 제거하고 유충 서식지 관리를 강화해 해충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함.

【처리 결과】

건의처	안산시, 안산시 단원보건소	담당과	건설도로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기초처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의견	○ 방역소업 : 정기적으로 소독실시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실시할 예정임.				